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

- 제12차·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6.19.·7.3.) 조치 의결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3일 제1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舊)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하여 과징금 총 271억 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 각 건별로도 각각 역대 최고치(CSAG 169.4억원) 및 3번째로 높은 금액(CSSL 102.3억원)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T일, 이하 모두 한국시각 기준) 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음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지만,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되어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공매도 규제 개요(하단) 및 위반행위 세부유형(붙임1) 참조]

조치대상자	위법행위	과징금 (단위: 천원)
舊 Credit Suisse AG (現 UBS AG)	2021. 4. 7.~2022. 6. 9. 기간 중 소유하지 아니한 20개사 주식 162,365주 매도주문 제출 (주문금액 60,330,945,194원)	16,943,900
Credit Suisse Singapore Ltd. (CSSL)	2021. 11. 29.~2022. 6. 9. 기간 중 소유하지 아니한 5개사 주식 401,195주 매도주문 제출 (주문금액 35,283,219,350원)	10,229,100
합 계		27,173,000

이에 앞서 6월 19일 제12차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와 제180조의3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하여 과태료 총 2억 8,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국내 금융투자업자 4개사] (주)안다자산운용, 아스트라자산운용(주), 에이원자산운용(주), (주)아울자산운용
 [외국 금융투자업자 2개사] Merrill Lynch International, Daiwa Capital Markets Europe Limited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공매도 규제 개요 >

① 공매도의 제한 (자본시장법 제180조, 시행령 제208조)

- ▶ [공매도]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매도시점에 상장증권을 소유하지 않았으나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음.
- ▶ [차입공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는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방법을 따르는 경우 허용.

②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 의무 (일별·종목별 적용,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제180조의3)

- ▶ [정의] 순보유잔고 = 보유총잔고-차입총잔고, 순보유잔고 비율 = 순보유잔고/발행총수
- ▶ [보고의무 발생기준] 순보유잔고 ①비율≥0.01% & 평가액≥1억원 또는 ②평가액≥10억원
- ▶ [공시의무 발생기준] 순보유잔고 비율≥0.5%
- ▶ [기한] 의무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되는 날 장 종료 후 지체없이(당일 자정까지 허용)

※ [붙임1] 조치대상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세부유형 (제13차 증선위)

[붙임2] 공매도 규제 위반 관련 제재조치 현황

[붙임3]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 위반 과태료 조치 (제12차 증선위)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석란	(02-2100-2600)
		담당자	서기관	김윤희	(02-2100-2603)
<공동>	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	책임자	실 장	김회영	(02-3145-5630)
		담당자	팀 장	심재호	(02-3145-563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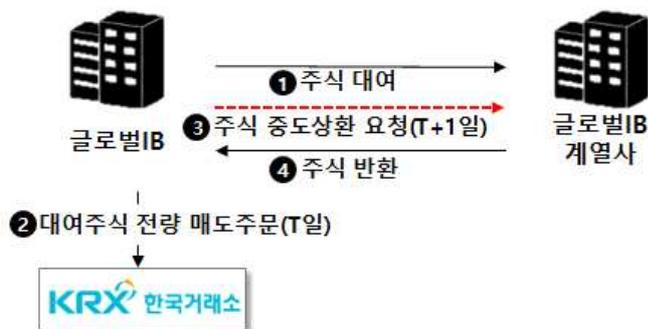
①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에게 대여 중인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매도한 경우 공매도 규제 위반

○ 대여 중인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T일)하면서 차입자에게 주식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그 다음날(T+ 1일) 실시

⇒ 매도주문 시점(T일)에서 해당 주식매매 결제일(T+ 2일)까지 대여 중인 주식의 반환(T+ 3일까지도 가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동일 그룹 소속 계열사라는 이유로 대여주식 중도상환 절차 이행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 중복 매도 등으로 결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의할 필요

▶ [유형①] 외부에 대여 중인 주식의 반환 확정 전 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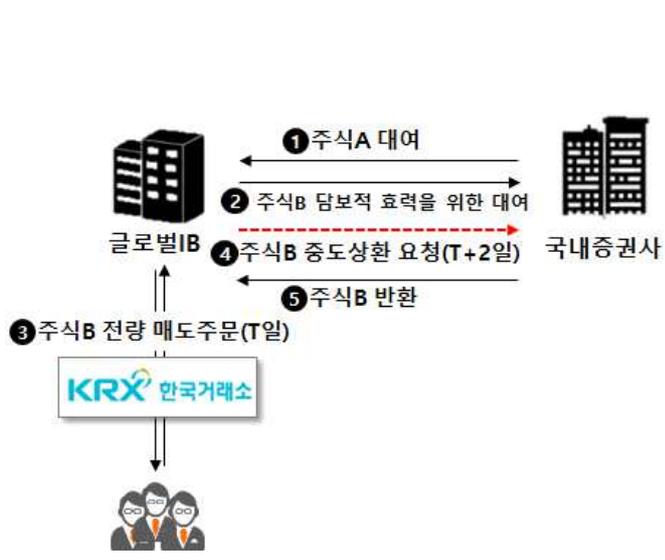


- ① 글로벌IB → 글로벌IB 계열사: 주식 대여
 - ② 글로벌IB :
대여 중 주식 전량 매도주문(T일)
* 주식 매매계약 결제일(T+2일)
 - ③ 글로벌IB → 계열사:
주식 중도상환 요청(리콜, T+1일)
 - ④ 계열사 → 글로벌IB:
주식 반환(T+3일까지; 대차계약에 따라 리콜일로부터 표준결제주기내 반환 의무)
- ⇒ 결제일(T+2일) 도과 후 반환될 수도 있으므로 매도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로 볼 수 없음

② **담보적 효력***을 위하여 외부에 제공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반 대차거래와 동일하다면 **대여주식의 매도와 마찬가지로 ‘반환이 확정된 대여주식’의 매도만 가능**

* 외부로부터 차입한 주식에 대한 적정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동일 상대방에게 대여한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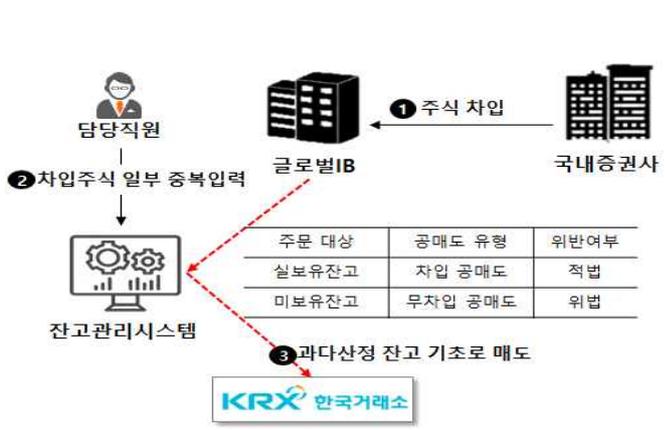
▶ **[유형②] 담보적 효력을 위해 외부에 제공한 주식의 반환 확정 전 매도**



- ① 국내증권사 → 글로벌IB: 주식A 대여
 - ② 글로벌IB → 국내증권사: 주식A 차입에 대한 적정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주식B를 대여**
 - ③ 글로벌IB: **주식B 전량 매도주문(T일)**
 - ④ 글로벌IB → 국내증권사: **주식B 증도상환 요청(리콜, T+2일)**
 - ⑤ 국내증권사 → 글로벌IB: **주식B 반환(T+4일까지)**; 대차계약에 따라 리콜일로부터 표준결제주기내 반환 의무
- ⇒ 결제일(T+2일) 도과 후 반환될 수도 있으므로 **매도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로 볼 수 없음**

③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공매도 규제위반 주문금액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잔고관리 시스템의 철저한 운영 및 관리 필요**

▶ **[유형③] 차입수량 중복입력에 따라 과다산정된 미보유잔고 매도**



- ① 글로벌IB: **주식 차입**
 - ② 담당직원이 차입주식 수기입력 중 일부 **중복입력(보유잔고 과다산정)**
 - ③ **과다산정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 ⇒ 시스템상 보유잔고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잔고에 대한 매도는 무차입공매도에 해당
- 실보유잔고: 차입공매도(적법)
 - 미보유잔고: 무차입공매도(위법)

□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제도 시행('21.4월) 이후 적발 강화·엄중 제재 노력에 따라, 제재건수가 지속증가하고 제재수준도 크게 높아지고 있음

* [과태료] '21.4.5일까지 위반행위에 부과 → '26.4.5일 부과 종료

* [과징금] '21.4.6일 이후 위반행위에 부과 → '23.3.8일 최초 부과

○ (과태료) 최근 조치건수가 연간 16건('21년)에서 32건('22년)으로 2배로 확대, 건당 평균금액은 대체로 1억원을 하회

○ (과징금) '23.3월 60억원(2건) 최초 부과 후 '24.7.3일까지 총 42건, 635.6억원 부과 → 글로벌 IB 3개 그룹 과징금이 537억원(5건, '23.12월 및 '24.7월)으로 전체의 85% 차지

-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 그룹에 대한 전수조사 착수 (금감원, '23.11월) 이후 평균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조치 중

<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제재 현황 >

구분 \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1~7월	글로벌IB
조치*	과태료				과징금 + 과태료(2건, '23년)		과징금 ('23.12, '24.7.)
조치건수 (건)	10	4	16	32	37	7	5
부과금액 (억원)	4.7	7.3	8.0	24.3	370.9	276.6	537.0
평균금액 (억원/건)	0.5	1.8	0.5	0.8	10.0	39.5	107.4
최고금액 (억원)	0.7	3.6	1.8	6.1	114.4	169.4	169.4

붙임 3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 공시 위반 과태료 (제12차 증선위)

(단위: 천원)

연번	조치대상자	위법행위	과태료
1	(주)안다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지연보고 및 지연공시] 2019. 7. 16.~2023. 4. 18. 기간 중 총 20일, 103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와 총 17일, 4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의무를 기한 내 미이행	138,000
2	Merrill Lynch International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연보고 및 지연공시] 2019. 7. 9.~2022. 3. 8. 기간 중 총 2일, 1,166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와 총 2일, 117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의무를 기한 내 미이행 [미보고] 2019. 11. 5.~2022. 9. 14. 기간 중 총 268일, 23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를 미이행	57,000
3	Daiwa Capital Markets Europe Limited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연보고] 2019. 8. 5.~2021. 8. 27. 기간 중 총 36일, 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를 기한 내 미이행	39,000
4	아스트라자산운용(주) (국내 금융투자업자)	[지연보고] 2019. 8. 26.~2019. 8. 28. 기간 중 총 3일, 8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를 기한 내 미이행	18,000
5	에이원자산운용(주) (국내 금융투자업자)	[지연보고 및 지연공시] 2019. 8. 13.~2019. 8. 14. 기간 중 총 2일, 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와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의무를 기한 내 미이행	12,000
6	(주)아울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지연보고] 2019. 8. 6.~2019. 8. 28. 기간 중 총 14일, 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를 기한 내 미이행	6,000
7	문○○ (개인투자자)	[지연보고 및 미보고] 2019. 8. 30.~2022. 7. 26. 기간 중 총 18일, 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를 기한 내 미이행 또는 미이행	14,200
합계			284,200